

20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계획

목 적

- ❖ 농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

1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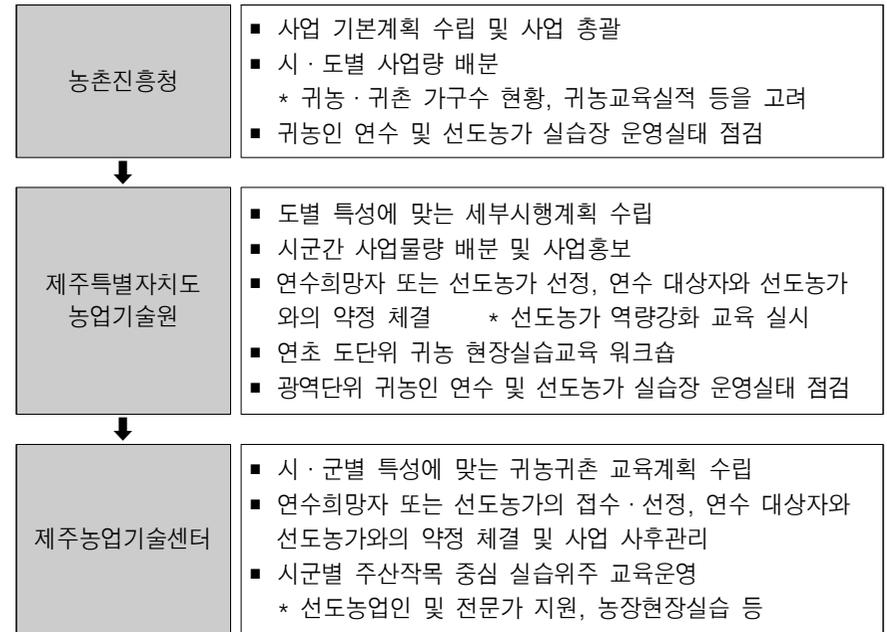
-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) 또는 성공 귀농(농업)인 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, 정착과정 상담·경영기법, 창업과정 등 연수
-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-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, 농산업분야 창업(일자리창출) 시,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2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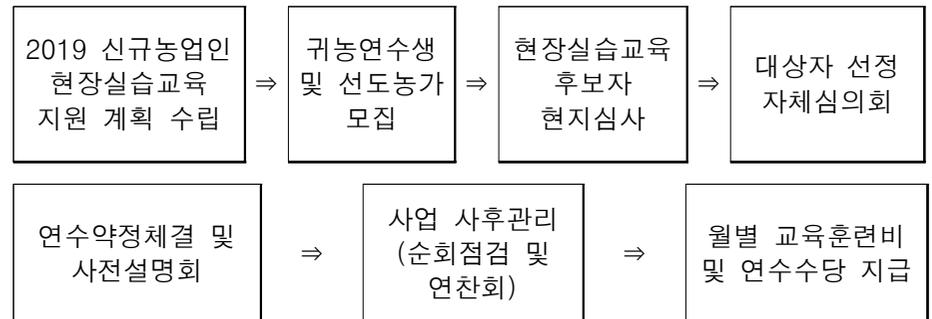
- 사업량: 6개팀 12명(선도농가 6명, 귀농연수생 6명)
- 사업기간: 2019년 3월 ~ 11월
- 사업비: 36,000천원(국비 50%, 도비50%)
 - 1,200천원/월(20일, 160시간 기준) × 6개팀 × 5개월 = 36,000천원
 - 귀농연수생 800천원/월, 선도농가 400천원/월 (20일, 160시간 기준)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중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중심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5개월분 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원 등

3 추진체계

○ 중앙단위 추진체계



○ 제주농업기술센터 추진체계



4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귀농연수생

-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센터의 관할 농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·귀촌인 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* 우선순위: ①순위: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, ②순위: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
- * 단,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
- *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 제출 시 선발 가점부여(연수계획서 별첨)
- *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 대상자가 연수희망시 우선 배정

농식품부 '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' 대상자 관련 주의 사항

1. 농식품부 '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'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농식품부 사업비(영농정착지원금)을 지급받는 자(독립경영자)는 '현장실습교육' 연수대상자로 **선정 불가**
2. 농식품부 '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' 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, 사업비(영농정착지원금)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(독립경영 예정자)가 현장실습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실습교육 연수대상자로 **우선 선정**

단, 독립경영예정자가 독립경영자로 전환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현장실습교육훈련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함(중복 지급 불가)

- *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명단은 확정 시 추후 별도 통보됨(농진청→도기술원→센터)

○ 선도농가
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 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
- *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(학습지원 계획서 별첨)

5 운영방법

○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·강화(필수+선택과정)

- (필수)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- (선택) 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습득기술의 자가 영농 적용실습 등
- * 귀농현장실습 성과평가, 심화기술교육, 관련 전문가초청 교육, 자율학습조직 운영, 도시 등 타산업 연계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, 실습기록관리 시스템 지도, 귀농연수생 영농기반 확보, 도시소비자 연계
- * 습득기술의 적용실습: 자가영농지 실습, 연구개발, 시제품제작, 창업관련 전문기술 습득 등

○ 귀농연수생 (농업인)안전공제 등 의무적 가입

- 안전공제 가입비용은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협의 후 부담여부 결정
- 최종 대상자 확정통보 후 7일 이내로 (농업인)안전공제 사본 제출

○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

- 5개월, 160시간/월 ☞ 연간 총 800시간
- **자가영농 실습인정(월 80시간 이내) :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**
 - * 자가영농지 실습은 매달 현장실습 총 연수시간의 50%만 인정
-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
 - *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의 소유물로 함
-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5개월 동안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,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
-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 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
- *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(농업기술센터)에 귀농연수생 또는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

○ '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개선사항

- 주작목+부작목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
-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
-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습 추진 가능(지역여건 고려)
 - * 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, 실습기간 등 협의(예: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, 2명의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도 있음, 조별 3명 이상 불가)

○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온라인시스템 필수운영(e-HRD 시스템 활용)

-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(<https://hrd.rda.go.kr>) 회원가입
- 회원가입 후 매월 「귀농현장실습교육→현장실습교육보고서」 작성
 - *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(→반드시 시스템 등록)
 - *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우수자에게 귀농창업교육 대상자 선발 및 귀농창업자금 배정 시 가점부여 자료로 반영됨

○ 현장실습교육 이해관계자 워크숍 실시

- 사업참여자(선도농가, 연수생 등 포함) 또는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매칭 시 사전 워크숍 등
 - * 현장실습교육 운영 방안, 순회워크숍 진행, 강사풀은 농촌진흥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와 협력

○ 사업대상자 선정

【 귀농연수생 】

- 연수대상자 선정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(붙임 11 서식)을 통해 최종 선정
 - * 실습장 약정체결 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, 연수시행자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수시행자당 2인 이내로 배정·약정을 원칙으로 함

【 선도농가 】

- 공고 모집을 통해 접수된 연수시행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,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
- 선정된 연수시행자와 연수대상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
 - * 단, 연수자와 연수시행자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)

○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

-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기술센터 담당자가 지도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(붙임 12 서식)을 작성 관리·비치함
 - *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
 - *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

<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>

-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6 지원내용

- (귀농연수생)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(월 80만원 한도, 5개월)
 - 단,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,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 - ※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 : 4만원(식비, 교통비 등)
- (선도농가)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(월 40만원 한도, 5개월)
 - 교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
9 교육 신청 및 접수

- 교육신청방법
 - 방문접수(주소: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)
- 홍보기간: 2019.02.01.(금) ~ 모집 인원 충족 시까지
- 신청기간: 2019.02.11.(월) ~ 2019. 02.22.(금)
 -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추가모집 가능
- 제출서류

【귀농연수생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3 서식) 1부
- ②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붙임 4 서식) 1부
 - *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(<https://hrd.rda.go.kr>) 회원가입 후, '귀농현장실습교육' → 현장실습교육 신청'에서 "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붙임 4)" 입력 후 제출
- ③ 보안서약서(붙임 8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9 서식) 각 1부
- ④ 기타 귀농연수생 선정기준(붙임 2 서식) 해당 증빙자료 각 1부

【선도농가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붙임 5 서식) 1부
-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(붙임 6 서식) 1부
 - * 운영계획서: 연수시행자의 주 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
 - *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(<https://hrd.rda.go.kr>) 회원가입 후, '귀농현장실습교육' → 선도농가 등록 풀'에서 "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(붙임 7)" 입력 시 선정 가점 부여
- ③ 보안서약서(붙임 8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9 서식)